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합103119(본소), 2016가합111264(반소) 판결
[매매대금 · 정산금 등 청구의 예비적 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변론 종결 2017. 5. 26.

판결 선고 2017. 7.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5,000,000원 및 그 중 6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5.부터,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7.부터,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2.부터 각 2017. 7. 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59,058,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의 상속

1) 원고와 피고 및 소외 C는 남매 사이이다. 원고와 피고, C의 어머니 D가 2012. 7. 3.에, 아버지 E이 2013. 4. 6.에 각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 C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 D 명의의 김포시 F, G 각 토지(이하 'F 토지',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25/100 지분, 피고가 40/100 지분, C가 35/100 지분을, 망 E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16/100 지분, 피고가 84/100 지분을 각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 후 C는 F, G 각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그 중 15/100 지분을 원고에게, 20/100 지분을 피고에게 각 나누어 주었다.

3) 원고와 피고는 F, G 각 토지 중 원고가 40/100 지분, 피고가 60/100 지분에 관하여 2012. 7. 3.자 합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7.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 토지 및 H 건물 중 원고가 16/100 지분, 피고가 84/100 지분에 관하여 2013. 4. 6.자 합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7.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상속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 지분 전부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H 건물의 지분 16%와 김포시 F, G의 지분 25%를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에 판다.1) 1억 8,000만 원에 파는 이유는 거래 성사 전후에 원고 이름으로 나온 세금과 나을 세금을 모두 피고가 대신 납부한다는 조건이 성사됐기 때문이다.

피고는 양도세 신청을 위해 원고와 함께 세무서에 동행한다.

전기료(지하 1층) 25,070원도 청구한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는 게 맞지만 피고는 계약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9,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사 나가는 날 9,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시 피고는 위약금 두 배를 물어준다.

1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단 1원도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각서의 공증을 위한 요금도 피고가 낸다.

1억 8,000만 원을 받고 차후에 원고 이름으로 나오는 각종 세금이 있다면 이것 또한 모두 피고가 대납한다.

1억 8,000만 원을 받고 이사를 나간 이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원고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1억 8,000만 원을 받고 이사를 나간 이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원고는 개입하지 않는다.

1억 8,000만 원을 받고 이사를 나간 이후 피고는 손해가 있어도 원고를 상대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1억 8,000만 원을 받고 이사를 나간 이후 원고는 피고가 큰돈을 벌어도 지분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약속들이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을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의 두 배 3억 6,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I동 토지 및 I동 건물에 관하여는 각 2015. 5. 4.에, F, G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각 2015. 5. 27.에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5. 5.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I동 토지 및 I동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2015.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2,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는 2016. 9. 6. I동 건물에서 퇴거하여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문언상 매매목적물에 I동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F, G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 60/100이 아닌 25/100을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초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F, G 각 토지 지분의 25/100을 상속받아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그 대지도 함께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속에 관한 채권채무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7호증 각서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상속 지분 전체를 매매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1억 8,000만 원 중 2,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5,700만 원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1억 8,000만 원 합계 3억 3,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는 상속 관련 채무를 대신 변제한 다음, 2015. 2.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신 변제한 상속 관련 채무가 2억 4,6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2억 4,6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5. 2.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던 I동 건물 4층에 관하여 위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될

때까지의 차임을 2억 4,600만 원으로 정한 뒤 위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위 4억 9,200만 원(= 2억 4,600만 원 + 2억 4,600만 원)의 채권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받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는데(즉, 돈의 수수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지분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약정서(갑 제2호증)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고, 위 상계합의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7호증)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피고가 2015. 5. 21. 원고에게 지급한 2,3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이다).

2) 예비적으로, 위 1)항의 상계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차임 채권 합계 4억 9,200만 원 및 그 중 차임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과 원고의 매매대금 및 위약금 채권 합계 3억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2016. 11. 10.자 준비서면 부분의 송달로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는바, 순차로 상계하고 나면 결국 피고의 대여금 채권 159,058,611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계충당되고 남은 대여금 159,058,6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매매대금 1억 5,700만 원(= 1억 8,000만원 - 2,300만원)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8,000만 원 합계 3억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4,6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외에 같은 금액의 차임 채무를 더 부담하였는지 여부

1)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25. 피고에게 "아버지 E과 어머니 D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 및 이자 비용, 개인 채무 2억 4,600만 원을 차용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제5호증)와 "원금 + 이자 : 2억 4,600만 원, 변제기일 : 2015. 9. 30. 원고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6호증)을 각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 2. 25. 당시 피고에게 2억 4,6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위 1)항의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금 채무에 더하여 I동 건물 4층에 대한 2억 4,600만 원의 차임 채무까지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와 차용증(을 제6호증)은 같은 날 작성된 서류인데, 그 차용금액이 동일하게 2억 4,600만 원이어서 그 채무원인이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각 2억 4,600만 원씩 총 4억 9,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이를 합하여 하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채무원인을 별도로 명시한 두 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뿐만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위 차용금이 발생한 원인을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 및 이자비용, 개인 채무'라고 기재하였으나, 차용증에는 위 차용금이 발생한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I동 건물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6%의 지분을 가지고 거주하던 I동 건물 4층의 차임을 망 E이 사망하여 원고와 피고가 I동 토지 및 건물을 상속한 2013. 4. 6.부터 위 각 부동산이 매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5. 9. 30.까지 약 2년 6개월간 총 2억 4,6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차임 상당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2억 4,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계산근거도 없다.

④ 원고와 피고, C는 2013. 6. 20.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망 E 재산의 매매 및 원고와의 상속재산 분배는 2018. 6. 20.까지를 그 기한으로 처리하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망 E 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까지 원고는 망 E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I동 건물 4층의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차임 상당액을 기재하지도

않았는바, 상속재산 분배가 끝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 원고에게 부채상환 통보서(을 제3호증)를 보내면서 상속한 부채, 상속 관련 세금 및 비용 등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계산하였고, 일부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항목은 부채상환 통보서 끝 부분에 별도로 기재하였음에도, 위 부채상환 통보서 문면 어디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동 건물 4층 부분의 차임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대가없이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1) 원고는 2015. 2. 25. 피고에게 2억 4,6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을 각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원고는 2015. 3. 23.부터 1동 건물 및 F, G 각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매도한다. 위 내용으로 추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7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2015. 2. 25.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억 4,600만 원 뿐이었던 점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7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원고의 매매대금 채권과 피고의 위 2억 4,6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 1)항의 인정사실 또는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1억 8,000만 원에 파는 이유는 거래 성사 전후에 원고 이름으로 나온 세금과 나을 세금을 모두 피고가 대신 납부한다는 조건이 성사됐기 때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상속 관련 세금 및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가 부담해야 했던 세금 등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면제해 주고 그 채무만큼을 전체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실제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F, G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매매목록에 거래가액을 1억 9,500만원으로 기재하였고, I동 토지 및 I동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매매목록에 거래가액을 2억 3,10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매수한 금액으로 신고한 거래가액 합계 4억 2,600만 원(= 1억 9,500만 원 + 2억 3,100만 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4,600만 원을 공제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1억 8,000만 원과 일치한다.

③ 2015. 3. 23.자 각서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I동 건물 및 F, G 각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매도"한다고 하였을 뿐, 이를 "무상"으로 매도한다거나 대가없이 "이전"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고가로 다시 매도하더라도 원고가 매매차익을 요구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각서를 작성하면서도 원고가 추후 피고에게 I동 건물 및 F, G 각 토지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제1의 나.항 부분 각주 1) 참조].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서 및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했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또는 각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8,000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및 I동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외의 다른 권리에 관한 기재가 없다.

⑤ 피고는 2015. 5. 21. 원고에게 지급한 2,3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개개의 법률행위마다 상속재산 합의서, 부동산 양도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을 작성했던 기존의 거래형태와는 달리 위 2,3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 등 피고가 위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2억 4,6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외에 같은 금액의 차임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고에게는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에게는 그에 따른 정산 매매대금 채권만이 남은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억 4,6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 원인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의 감액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10%가 계약금으로 정해지고 그 액수를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일 이후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받게 되어 그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약 1년 5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1동 건물을 사용·수익한 점(민법 제587조 1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하여 1,8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매매대금 1억 5,700만 원 및 위약금 1,800만 원 합계 1억 7,500만 원 및 그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중도금 6,700만 원(= 9,000만 원 - 2,3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I동 토지 및 I동 건물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날인 2015. 5. 5.부터(민법 제587조 3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I동 건물에서 퇴거한 다음날인 2016. 9. 7.부터(민법 제587조 2문), 위약금 1,8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 도달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2.부터(피고의 위약금 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혁재

판사백승준

판사배인영

별지

1) 위 각서에는 '김포시 F, G의 지분 2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F, G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은 40/100이므로, 이는 옳기로 보인다.